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박성훈·이헌승·구자근

백종헌 • 이인선 • 김기현

임이자 • 박성민 • 김성원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특례(이하 "톤세제"라 함)를 두고 있으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톤세제 제도는 해운기업의 납세액 예측에 따른 경영 안정화를 비롯하여 톤세 절감액을 통한 재투자 가능성이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며,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등 해운 선진국들 또한 톤세제를 채택하고 있는 등 해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톤세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톤세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주요 해운국과의 대등한 세제 환경 조성과 국내 해운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0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
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	
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	
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	
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	
표준은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29년 12월 31일</u>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	
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